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12. 22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12. 6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4. 12. 14

다. 상 정 일 자 : 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4. 12. 2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정 형 진)

가. 제안이유

현행 16개 부산직할시 사하구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조례 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교통·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1)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16개의 부산직할시 사하구세 감면조례와 2개의 신설조항을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함.

2)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함 (안 제2조, 제3조)

○ 면제세목 :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2000CC 이하 보철용 승용자동차) ▶ 현행과 같음

3)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 (안 제4조) ▶ 현행과 같음.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4)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안 제5조)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 현행 :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전액 면제

5)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 — (안 제6조) ▶ 현행과 같음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6)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안 제7조)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 ▶ 현행 :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

7)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안 제8조) ▶ 현행과 같음

○재 산 세 : 세율 1,000분의 1.5를 적용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8)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 (안 제9조) ▶ 신설 조항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1을 적용

9) 주차장에 대한 감면 — (안 제10조)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함. ▶ 현행과 같음

○다만, 주차장영업 개시일로 부터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

▶ 현행 : 다만,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6월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

○주차장법에 의해 신고·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 현행 : (...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

10)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안 제11조) ▶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함.

4)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안 제5조)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 현행 :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전액 면제

5)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 — (안 제6조) ▶ 현행과 같음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6)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안 제7조)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 ▶ 현행 :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

7)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안 제8조) ▶ 현행과 같음

○재 산 세 : 세율 1,000분의 1.5를 적용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8)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 (안 제9조) ▶ 신설 조항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1을 적용

9) 주차장에 대한 감면 — (안 제10조)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함. ▶ 현행과 같음

○다만, 주차장영업 개시일로 부터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

▶ 현행 : 다만,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검사이로부터 6월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

○주차장법에 의해 신고·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 현행 : (...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

10)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안 제11조) ▶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함.

11)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 (안 제12조) ▶ 현행과 같음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공단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를 면제함.

12)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안 제13조) ▶ 신설 조항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1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안 제14조)

○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함.

▶ 현행 : ... 1가구당 건축면적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 ...

○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14)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 (안 제15조) ▶ 현행과 같음

○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15)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 — (안 제16조) ▶ 현행과 같음

○ 지방공사(공단 포함)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를 면제함.

16) 부산직할시 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 (안 제17조) ▶ 현행과 같음

○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

17) 부산직할시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감면 — (안 제18조) ▶ 현행과 같음

○ 공업지역내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사하구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및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행 16개의 부산직할시 사하구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와 “고속철도건설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한시적 조례가 아니고 국가유공자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 면제조례 등 14개 구세감면 조례는 1994. 12. 31까지 유효하는 한시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이 기간이 경과 됨으로 자동폐지되고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일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발전적 취지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